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법 제15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”란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.

1. 「형법」 제2편 제25장(상해와 폭행의 죄)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인한 사망사고 및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행위
2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범죄 행위
3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7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로 인한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한 행위
4. 그 밖에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교

육감이 침해행위가 중대하여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도서·벽지 실태조사) ① 법 제18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관사 출입문 및 방범창 등 안전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
 2. 관사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비상벨 등 안전망 설치에 관한 사항
 3. 관사의 노후화에 관한 사항
 4. 여성 교원-경찰 연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
 5. 도서·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사항
 6. 그 밖에 관할청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·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- ② 실태조사는 서면조사,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
- ③ 관할청은 실태조사 결과를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관할청은 현장조사 시 관내 시설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.

부 칙

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실태조사 결과 제출에 관한 특례)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결과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원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-6650